

[공문] 리카온 손해사정 / '22년 상반기 평가결과 및 하반기 등급 안내(1종)

보낸사람 유근수 <geunsoo.yu@samsung.com> 22.08.26 17:00 주소추가 수신차단

1종 외부조사법인 '22년 상반기 평가결과 및 하반기 등급조정 안내

위탁업체명

리카온 손해사정

22년 상반기 등급

지 역	수도권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급	C	C	C	C	C

22년 상반기 평가결과

-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실적 기준
- 지역 Post 및 동일 등급(A~C) Peer Group 순위 평가 시행

지 역	수도권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동일그룹업체數	21	23	24	23	24
순 위	17位/21	19位/23	20位/24	10位/23	11位/24

세부평가점수

항 목	수도권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최종점수	54.5	17	51.2	19	49.1	20	56.4	10	54.5	11
1.사고조사품질(50)	26.5	13	22.2	13	19.1	19	25.4	6	25.4	9
2.법언인프라(40)	17.0	18	18.0	19	19.0	18	20.0	13	18.0	19
3. CS(10)	8.0		8.0		8.0		8.0		8.0	
4.가감점(±10)	3.0		3.0		3.0		3.0		3.0	

22년 하반기 등급

지 역	수도권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신규등급	C	C	C	C	C

※ '22년 표준위탁계약서 내 평가/운영 관련조항 안내

제13조 (업무품질평가)

- ① "위임인"은 계약 체결 시 또는 사전 공지된 평가항목에 따른 수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본 계약 기간 중 위임 업무량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임인"의 부실한 업무수행이 우려될 만한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위임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분기별 CS점이 점수가 2개 분기 연속하여 하위 10%에 해당되고, CS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업무 개선 노력에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7.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계약 체결 시 또는 사전 공지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등급이 하위 "10%" 에 해당되고, 향후 위탁업무 품질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보상혁신파트장

(담당자 : 유근수 수석 758-4771)

The above message is intended solely for the named addressee and may contain trade secret, industrial technology or privileged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otherwise protected under applicable law includ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y unauthorized dissemination, distribution, copying or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s strictly prohibited. If you have received this communication in error, please notify the sender by email and delete this communication immediately.

상기 메일은 지정된 수신인만을 위한 것이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메일이 잘못 전송된 경우, 발신인에게 알려 주시고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